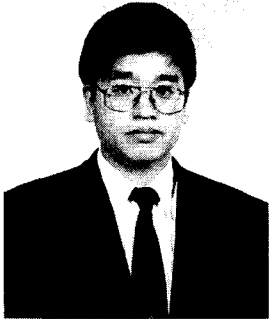


WTO 원산지규정과 주류업계 대응방안



김 규 태
〈산업연구원 연구조정실장〉

I. 정의 및 의의

원산지규정이란 각 회원국이 국제교역상품의 원산국을 결정하는데 적용하는 법률, 규정, 행정결정을 총칭한다. 즉 제품의 경제적 국적 (economic nationality)을 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러한 원산지규정은 그 적용목적에 따라 특혜 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비특혜 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이 있다.

특혜 원산지규정은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특정 국가간에 관세상의 특혜를 주는 경제공동체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카리브해 연안 이니셔티브(CBI) 등 특정국가군을 대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을 말한다. 이는 수혜국을 정확히 식별하여 비수혜국의 부당한 혜택 향유를 방지함으로써 당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비특혜 원산지규정은 수입제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부과, 원산지 표시, 무역통계 작성 등 무역정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을 말한다.

상품이 일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었을 경우 원산지 판정은 단순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세

■ 目 次 ■

- I. 정의 및 의의
- II. WTO 원산지협정의 주요내용
- III. 통일 원산지규정 제정 현황
- IV. 영향 및 대응방안

계화가 진전될수록 상품의 생산은 더 이상 일국에서 완성되지 않고 여러나라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생산공정이 국제적으로 분산되면서 원산지 판정기준이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워졌다. 이는 수출국에서 행한 활동 또는 공정이 원산지 자격을 부여할 만한 변화(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가에 관한 판정기준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지 않고 각국이 국익과 관련하여 임의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산지 판정기준과 원칙이 국별로 상이한 결과 동일제품이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른 원산지를 갖게 되는 문제, 동일국가내에서도 정책별로 상이한 판정기준이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¹⁾ 이와 같이 각국 원산지규정의 복잡성, 그리고 차별적 운용은 상당한 정도 무역장벽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원산지규정을 세계적으로 통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UR 협상과정에서 대두되었다. 이 결과 WTO 설립협정의 부속서로 『원산지규칙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 이하에서는 '원산지 협정'이라 칭함)』이 채택되어 작년 1월부터 발효하였다.

II. WTO 원산지협정의 주요내용

1. 적용범위

WTO 원산지 협정의 적용범위는 최혜국(MFN) 대우,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 세이프가드 조치, 원산지 표시 요건, 쿼터, 정부조

달등과 같은 비특혜적 통상정책수단(Nonpreferential Commercial Policy Instruments)에 한정되며, 일반특혜관세제도, 지역협정에 의한 무관세 대우(예를들면 NAFTA 등)와 같은 특혜제도에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부속서II에서 공동선언(Common Declaration) 형식을 통하여 특혜 원산지규정도 본 협정의 기본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2. 주요 협정내용

WTO 원산지 협정은 前文, 本文 9條와 附屬書 I, II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중요한 내용은 각국의 원산지규정이 무역 및 투자에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본 원칙, 통일 원산지규정의 제정을 위한 원산지규정 위원회와 원산지규정 기술위원회의 창설, 동작업계획 및 제정원칙의 설정 등이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은 3년의 시한으로 현재 협상이 진행중에 있는 통일 원산지규정 제정작업이 완료되어야 구체적인 실효성을 가질 것이다.

1) 원산지규정의 주요 원칙

WTO 원산지 협정은 통일 원산지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될 원칙(제2조)과 통일 원산지규정 제정 이후에 적용될 원칙(제3조), 통일 원산지 규정 제정시 반영하여야 할 원칙(제9조), 특혜 원산지규정에 적용될 원칙(Annex II.3)을 구분하고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각각에 적용될 원산

1) 미 상무부는 일본산 판독전용 메모리(EPROM : Erasable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에 관한 덤핑조사에서 『싱가포르에서 일본제 칩을 사용하여 조립된 EPROM』에 대해 직접회로 메모리의 제조공정중 前공정(웨이퍼의 포토·마스크, 각인, 확산, 각 칩의 절단)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동제품의 원산지를 일본산으로 판정하였다. 그러나 미 세관은 이와 반대되게 직접회로 메모리 제조공정중 後공정(칩의 조립, 검사)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를 취하였다. 따라서 이미 수입 칩으로 EPROM을 조립하는 것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제품의 원산지를 싱가포르産으로 판정한 바 있다.

지규정의 주요 원칙은 거의 동일하다.

(1) 무역장벽화의 지양

원산지규정은 교역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며, 이의 부당한 적용으로 인해 세계교역을 제한하거나 왜곡 또는 교란시키는 효과를 초래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은 원산지 판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거나 제조 또는 가공과 관련이 없는 특정요건의 충족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2) 무차별 대우 및 최혜국 대우 원칙

수출입 상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은 어떤 상품이 국산(domestic)인지 여부를 판정하는데 적용되는 원산지규정보다 엄격해서는 아니되며, 해당상품 제조업자들간의 제휴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회원국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3) 명료성·일관성의 원칙

원산지규정에 적용하는 행정결정을 내릴 경우 그 요건은 명료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특히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될 경우에는 세번변경으로 인정되는 세번단위(4단위 또는 6단위)와 이에 대한 예외를 자세하게 명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될 경우에는 부가가치비율의 산정방법을, 가공공정기준이 적용될 경우에는 관련상품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공정을 자세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원산지규정은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포지티브 기준(positive standard)에 기초하여야 하며,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는 기준을 명시하는 네가티브 기준은 포지티브 기준을 명료화하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이러한 원산지규

정은 일관되고, 통일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4) 투명성·공개성의 원칙

원산지규정에 적용될 법률, 규정, 사법결정 및 행정규칙은 공표되어야 하며, 당해 공표된 원산지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이 원산지규정을 도입하더라도 이를 소급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해 협정 제5조는 각 회원국에게 WTO 설립협정이 자국에 대해 발효되는 날 현재 시행중인 비특혜 원산지규정, 동 규정 적용과 관련된 사법결정, 행정규칙을 협정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WTO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혜 원산지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

또한 각 회원국은 WTO 원산지 협정 발효 후 통일 원산지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자국의 현행 비특혜 원산지규정을 개정 또는 새로이 원산지규정을 도입할 경우 이해관계자가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개정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규정의 발효일보다 적어도 60일 이전에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특혜 원산지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

한편 수출입업자의 원산지 판정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당국은 동판정을 150일 이내에 내려야 하며, 원산지 판정과 관련된 이러한 행정조치는 사법·중재 또는 행정절차를 통해 즉시 재심될 수 있어야 한다.

(5) 제출정보의 비밀보장 원칙

본래 비밀이거나 원산지규정 적용을 위하여 대외비 기준으로 제출된 모든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를 접수한 행정기관은 동정보를 제공한 개인이나 정부의 승낙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2) 통일 원산지규정의 제정

세계무역활동에 확실성(certainty)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통일 원산지 규정의 제정작업은 WTO 산하에 설치된 원산지규정위원회와 세계관세기구(WCO)의 지원을 받는 원산지규정기술위원회(이하에서는 “기술위원회”라 칭함)가 수행한다. 동 작업은 WTO 협정 발효일 이후 가능한한 조속히 개시되어야 하며, 작업 개시 후 3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통일원산지 제정작업체계 및 그 진전현황은 다음장에서 언급할 통일원산지규정 제정현황에서 자세히 언급하기로 하고 이하에서는 통일 원산지규정 제정원칙과 제정스케줄 그리고 동 제정의 실질책임을 가진 원산지규정 위원회와 기술위원회의 운영 및 임무만을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1) 제정원칙

통일 원산지규정은 비특혜부문이 적용되는 모든 정책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객관성, 합리성, 예견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동 규정은 일관성, 공정성을 가지고 합리적 방법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통일 원산지규정의 판정기준은 상품이 일국에서 완전생산(wholly obtained)된 경우에는 『완전생산기준』, 상품의 생산에 2개국 이상이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last 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실질적 변형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실질적 변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세번 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세번변경기준이 실질적 변형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부적절한 경우에 한해 보충기준인 부가가치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통일 원산지규정은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포지티브 기준을 원칙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원산지를 부

여하지 않는 기준을 명시한 네가티브 기준도 포지티브 기준을 명료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2) 제정 스케줄

기술위원회는 통일 원산지규정 제정요청을 원산지규정 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전생산 및 최소 작업 또는 가공에 대한 통일된 정의를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위원회는 1년 3개월 이내에 실질적 변형의 원칙적 기준인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될 품목선정 및 이의 적용기준(HS 4단위 또는 6단위 등)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2년 3개월 이내에 실질적 변형의 판정방법으로 보완기준(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이 적용될 상품의 선정 및 부가가치 비율 및 산정방법 개발, 특정품목에 대한 구체적 가공공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정작업은 원산지규정 위원회가 기술위원회에 작업의 착수를 요청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3) 원산지규정위원회(Committee on Rules of Origin)

원산지규정위원회는 각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며 협정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협의할 기회를 회원국에 부여하고 협정상의 임무 또는 상품교역위원회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회합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위원회에게 정보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정목적의 촉진을 위해 기술위원회에 작업을 요청할 수도 있다.

또한 원산지규정위원회는 협정 제2부(원산지 적용원칙) 및 제3부(통보·재심·협의·분쟁해결에 관한 절차적 협정)의 이행 및 운영을 매년 검토하여야 하며, 상품교역이사회에 당해 검토기간중의 진전상황(developments)을

매년 통보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원산지규정 위원회는 협정의 조문을 검토하여야 하며, 통일 원산지규정 제정작업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정문의 개정을 제안하여야 한다.

통일 원산지규정 제정작업과 관련하여 원산지규정위원회는 동 작업결과에 대한 기술위원회의 해석 및 의견(interpretations and opinions)을 제출토록 요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기술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승인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또한 원산지규정위원회는 동 작업의 정교화 또는 새로운 접근방법의 개발을 기술위원회에 요청할 수도 있으며, 기술위원회의 작업완료 후 협정과 의 전체적인 일치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4) 원산지규정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on Rules of Origin)

기술위원회는 협정 제4부(원산지규정 통일화작업) 및 부속서 I(기술위원회 관련사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통일 원산지규정의 제정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며, 동 협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원산지규정위원회에 정보와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위원회는 통일 원산지규정제정과 관련하여 동 작업결과를 최소 분기에 1회 이상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기술위원회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회원국 원산지규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특정기술적 문제를 조사하고 제출된 사실에 기초하여 적절한 해결책에 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기술위원회는

회원국 또는 원산지규정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관한 문제에 정보 및 자문을 제공하여야 하며, 협정의 운영 및 현상화에 대한 기술적 문제에 관한 정기보고서를 준비·회람하여야 하고 제2부(원산지 적용원칙) 및 제3부(통보·재심·협의·분쟁해결에 관한 절차적 협정)의 이행 및 운영에 관한 기술적 문제를 매년 검토하여야 한다.

Ⅲ. 통일 원산지규정 제정 현황

1. 개요

통일 원산지규정의 제정작업은 WTO 산하의 원산지규정위원회와 세계관세기구(WCO)의 지원을 받는 원산지규정기술위원회(이하에서는 '기술위원회'라 칭함)가 수행한다. 제정작업은 원산지규정위원회가 기술위원회에 작업의 착수를 요청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원산지규정위원회는 1995. 7. 20일에 기술위원회에 동 작업의 개시를 요청하였으므로 통일 원산지규정 제정작업은 1998. 7. 20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통일 원산지규정 제정작업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제1단계 작업은 완전생산물품과 최소작업 또는 최소공정에 대한 정의를 개발하는 작업으로서 작업개시후 3개월 이내에 완료토록 되어 있다. 제2단계와 제3단계는 품목별로 원산지 판정기준인 실질적 변형기준을 정하는 작업이다. 동 작업은 HS 상품분류별로 이루어진다. 원산지 판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세번변경기준²⁾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부가가치기준³⁾, 가공공정기준⁴⁾과 같은 보완

2) 세번변경기준이란 사용원료의 세번과 완성품의 세번이 서로 다른 경우 완성품 생산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하는 기준이다.

적 기준이 적용된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2단계 작업은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될 품목을 선정하고 세번변경방법으로 어떠한 기준(예를들면 HS 4단위 또는 6단위 등)을 채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작업으로서 작업개시후 1년 3개월 이내 즉 1996. 10. 20일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다.

제3단계 작업은 HS 품목분류에 입각한 세번변경기준만으로 실질적 변형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 이를 보완하는 부가가치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이 적용될 품목을 선정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채택하는 작업으로서 작업개시후 2년3개월 이내 즉 1997. 10. 20일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기술위원회에서의 통일 원산지규정 제정작업결과는 원산지규정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 상품교역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후 동 확정된 통일 원산지규정은 WTO 각료회의에 보고되며, 각료회의는 작업결과를 원산지협정부속서로 첨부하고 이의 발효시점을 결정하게 된다.

2. 진전 상황

통일 원산지규정 제정작업은 WTO의 원산지규정위원회가 WCO(세계 관세기구) 산하 원산지기술위원회의 작업결과를 승인하는 형태로 수행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술위원회가 1995년 10월 20일 동 작업에 착수한 이래 금년 9. 8~9. 26에 개최된 제9차 기술위원회까지

의 주요협상결과에 대해서만 서술하고자 한다.⁵⁾

(1) 전품목에 대한 진전상황

(1) 제1단계 작업의 완료

① 완전 생산물품(wholly obtained goods)의 정의

1995. 9. 11~9. 22일에 개최된 제2차 기술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된 완전생산물품의 정의는 1996. 5. 10일 개최된 제6차 원산지 규정위원회에서 몇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승인·확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완전생산물품은 당해국에서 완전 획득된 물품(제1유형)과 당해국에서 획득되지는 않았지만 완전생산물품으로 간주되는 물품(제2유형)으로 나뉘어진다.

제1유형에 속하는 물품은 (a)당해국에서 태어나서 성장된 산 동물, (b)당해국에서 수렵·덫·낙시·포획활동에 의해 획득된 동물, (c)당해국에서 산 동물로부터 획득된 산품, (d)당해국에서 수확·수집·채집된 식물과 식물성 산품, (e)당해국에서 추출되거나 획득된 광물 및 기타 천연물질, (f)당해국에서의 제조·가공활동·소비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오직 처리목적(disposal) 또는 원료의 재생용으로만 적합한 스크랩과 웨이스터, (g)더 이상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없거나 재생 또는 수리될 수 없는, 당해국에서 수집된 제품으로서 오직 처리목적 또는 부품·원료의 재생용으로만 적합한 스크랩과 웨이스터, (h)더 이상 당초 목적을

3) 부가가치기준이란 상품에 부가되는 가치가 특정비율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가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하는 기준이다.

4) 가공공정기준이란 일반적으로 각 제품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적인 제조 또는 가공공정을 예시하고, 당해 가공공정이 행해진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하는 기준이다.

5) 금년 11. 24~12. 5일까지 제10차 기술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저자는 동 자료를 본고작성시까지 입수하지 못하여, 동협상결과를 본고에 반영하지 못하였음.

수행할 수 없거나 재생 또는 수리될 수 없는 제품으로부터 재생된 부품 또는 원료, (i) (a)~(h)에 언급된 상기 물품만으로(solely) 당해국에서 획득 또는 생산된 상품 등 9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동 9개의 형태중 완전생산물품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a)~(f), (i) 등 7가지 형태이며, (g)(h) 등 2개 형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논의중에 있다.

한편 제2유형에 속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논의중에 있다. 특히 공해 등 한 국가 밖에서(outside a single country) 획득된 물품 중 완전생산물품으로 간주되는 물품의 정의와 관련해서 공해상에서 획득한 수산물의 경우, 선박이 "등록된 국가"에 원산지를 인정해야한다는 주장(미국, EU, 캐나다 등)과 이에 추가하여 선박 "용선국"도 원산지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세네갈, 모로코, 필리핀, 인도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공해상에 설치된 "구조물 또는 설치물"로부터 획득한 광물자원의 경우, 구조물 또는 설치물에 "법적 책임"이 있는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구조물 또는 설치물의 "임차자가 속하는 국가"도 원산지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논의되고 있다.

② 최소작업/공정(minimal operations or

processes)의 정의

최소작업 또는 최소공정은 단일의 형태이든 복수의 형태이든 그 자체로는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데에 대해서는 일반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원산지를 인정하는 세번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해에 예시된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최소작업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소작업이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작업의 결과로서 세번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하게 되며, 완전생산물품에 최소작업을 행하더라도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최소작업 또는 최소공정에 대해서는 24개의 형태가 예시되었다. 즉 통풍, 펼침, 건조, 냉장, 불량품 제거, 부식방지 페인트 칠, 녹의 제거, 세정, 세탁, 선별, 분류, 등급구분, 테스트 또는 측정, 개봉, 포장 또는 재포장, 포장재분류, 라벨표시, 물 또는 기타 수성액에 의한 희석, 이온화, 소금 절입, 탈각, 선반설치, 압착, 분쇄 등 24개 유형은 최소작업 또는 최소공정에 해당하여 설사 세번변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산지가 부여되지 않는다.

(2) 제 2단계 작업의 계속

제3차 기술위원회 회의때부터 시작된 제2단계 작업의 금년 9월까지의 협상진전상황을 살펴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위원회

<표> 부문별 합의품목 현황(1997년 9월말 현재)

단위 : 개, %

	품목수(A)	합의품목(B)	합의율(B/A)
농축수산물	200	86	47.0
광 산 품	67	61	91.0
제 조 상 품	974	617	63.3
총 계	1,241	772	62.2

주) 합의품목은 부분합의를 포함하였음.

는 총 검토대상 1,241개 품목(HS 4단위 기준) 모두를 1차적으로 검토 완료하였다. 이중 62%에 해당하는 772개 품목에 대해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기로 합의(부분합의 포함)하였으며, 나머지 469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2) 주류품목에 대한 진전상황

주류인 맥주(HS 2203), 포도주(HS 2204), 베르못과 이와 유사한 포도주(HS 2205), 기타의 발효주(HS 2206),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HS 2207, 2208) 등 6개 품목에 대한 통일 원산지규정의 제정상황을 살펴보면, 맥주, 베르못과 이와 유사한 포도주, 기타의 발효주 등 3개 품목은 원산지 판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3개 품목은 현재 협상이 진행중에 있다.

이하에서는 주류품목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과 관련하여 동 기준의 일반원칙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과 세부 품목별 원산지 판정기준 및 이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일반원칙

일반원칙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한 국가는 일본, 미국, 뉴질랜드 등 3개국으로 이들 국가의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본

원칙적으로 혼합(mixing)은 실질적 변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원산지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1)혼합(mixing)이 상품의 성질(character)을 변화시키거나 당해 상품에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부여할때, 2) 혼합의 노우하우(예를 들면 구성물질의 비율, 맛 및 향)가 필수적일때, 3) 혼합이 복잡한 공정(complicated processes)을 걸쳐 수행될

때에는 실질적 변화로 인정하여 원산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와인과 위스키의 혼합(blending)은 상기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하여 원산지를 인정하여야 한다.

② 미국

수입원자재와 완제품간에 세번이 4단위에서 변경되면 원산지를 부여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4단위 세번변경은 투입재(inputs)또는 구성재(constitution)를 다른 상품으로 변형시키는 것으로 이는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보완기준(supplemental rules)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보완기준으로 1) 포도즙(grape must)을 와인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되며, 2)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HS 2208)에 있어서 여러가지 주정조제품(spirituous preparation)을 생산하는데에 관련된 공정도 실질적 변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산지를 인정한다. 그러나 보완기준으로 3)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HS 2106.90)의 음료성분(beverage bases)에 단순히 물 또는 알콜의 첨가는 실질적 변형이 아니며, 4) 단순히 중성증류주(neutral spirits)의 알콜도수(alcoholic concentration)를 변경시킴으로써 HS 2207과 HS 2208간의 세번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실질적 변형이 아니기 때문에 원산지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물로 단순히 희석시키는 공정(mere dilution with water)”은 향후에 재심 의되어야 한다.

③ 뉴질랜드

비원산지 포도(non-originating grapes)의 가공은 원산지가 부여되지 않으며, 비원산지 와인과 원산지 와인의 혼합(blending)의 경우에도 원산지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2) 품목별 원산지 규정

① 맥주(HS 2203)

맥주의 경우에는 “수입원자재와 완제품간에 세번이 4단위에서 변경될 경우 원산지를 부여한다”고 함으로써 원산지 판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 변경기준』을 채택하였다.

② 포도주(HS 2204)

• 일본

다양한 종류(different varieties)의 혼합(blending)으로 와인이 생산된다는 것은 많은 와인생산지에서 오랜기간에 걸쳐 형성된 공정이다. blending은 특정주류의 맛과 향 등 실질적인 특성을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새로운 주류를 생산해 내는 기술이다. 특히 표준품질 테이블와인(standard-quality table wines)의 생산은 주로 혼합(blending)에 의존하고 있다. 더구나 blending은 단순한 mixing이 아니라 오히려 혼합하는 사람의 숙련과 경험에 바탕을 둔 매우 정교한 공정(sophisticated process)이다. 따라서 와인의 blending은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된다. 더구나 동일 브랜드의 와인이라 하더라도 그 구성요소의 비율이 항상 일정하지 않고 각 생산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만약 와인의 blending이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되지 아니하여 원산지를 부여받지 못한다면, 동일브랜드의 blended wine이라 하더라도 원산지가 통일되지 않으며, 이것은 안정된 무역거래에 악영향을 끼치고 소비자들에게도 원산지표시에 관하여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한편, 발포성 포도주(sparkling wine)와 기타 포도주, 포도즙의 경우에는, 수입원자재와 완제품간에 세번이 6단위에서 변경되면 원산지를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소매용으로 병 또는 기타 용기에 주입함으로써 세번변경이 일어날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blending of wine의 경우는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산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 캐나다, 미국, 홍콩, 한국

발포성 포도주(sparkling wine)와 기타 포도주와 포도즙에 대하여, 캐나다는 당해그룹(HS 2204, 10-2204.21)이외의 세번 6단위에서 당해그룹의 세번으로 변경될 경우 원산지를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 외국산 원료(ingredients)가 물량으로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미국과 홍콩은 수입원자재와 완제품간에 6단위에서 세번변경이 발생할 경우 원산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다른 세번의 포도즙(grape must)으로부터 와인의 조제 역시 실질적 변형으로 보아 이에 원산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 미국과 홍콩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주장하고 있다.

③ 베르못과 이와 유사한 포도주(HS 2205)

베르못과 이와 유사한 포도주의 경우에는 “수입원자재와 완제품간에 세번이 4단위에서 변경될 경우 원산지를 부여한다”고 함으로써 원산지 판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였다.

④ 기타 발효주(HS 2206)

기타 발효주의 경우에는 “수입원자재와 완제품간에 세번이 4단위에서 변경될 경우 원산지를 부여한다”고 함으로써 원산지 판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였다.

⑤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 및 변성에틸알콜과 기타 변성주정(HS 2207)

원칙적으로 수입원자재와 완제품간에 4단위에서 세번이 변경되면 원산지를 인정하나, 몇 가지 예외를 주장하는 국가들이 있다. 일본과 홍콩의 경우 HS 2207에 해당하는 특정상품이 mixture와 distillation의 공정을 거쳐 동일세번의 다른 상품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은 HS 2208로부터 HS 2207로 변경될 경우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dilution 이외의 다른 공정이 추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되지만, mixing과 dilution이 모두 일어나는 공정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부여하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HS 2208의 상품을 concentration 또는 기타 공정 또는 denaturing 함으로써 HS 2207의 상품으로 변경시키는 알콜도수의 변경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산지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⑥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 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정음료(HS 2208)

홍콩은 HS 2207의 알콜의 dilution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산지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즉 최종재의 약 90%에 달하는 blended 위스키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으며, blending의 목적은 맛과 향의 개별적 특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더욱이 blending은 단순한 mixing이 아니라 많은 single malt와 다양성을 가진 single grain whiskies의 mixing과 같은 매우 복잡한 공정이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위스키의 blending은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된다. 더구나 동일 브랜드의 위스키라 하더라도 그 구성요소의 비율이 항상 일정하지 않고 각 생산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만약 위스키의 blending이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되지 아니하여 원산지를 부여받지 못한다면, 동일브랜드의 혼합위스키라 하더라도 원산지가 통일되지 않으며, 이것은 안정된 무역거래에 악영향을 끼치고 소비자들에게도 원산지표시에 관하여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캐나다,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등은 수입원자재와 완제품간에 세번이 4단위에서 변경되면 원산지를 인정하자는데 비해(단, HS 2207에서 HS 2208로의 변경은 예외) 홍콩은 6

단위 세번변경을 원산지판정기준으로 주장(단, HS 2207에서 HS 2208로의 변경은 예외)하고 있으며, 일본은 세번 6단위 변경과 더불어 증류주 또는 리큐어의 blending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용으로 병 또는 기타 용기에 blending 및 주입(putting)하는 공정에 의해 HS 2208.20 내에서의 세번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세번 6단위 변경(단, HS 2106.90과 HS 2207로부터 HS 2208로의 변경은 제외)을 주장하고 있다. 이의 근거로는 증류주, 리큐어, 코디얼 및 주정조제품의 조제품은 실질적 변형에 포함되지만, 음료성분(beverage base)에 단순히 물 또는 알콜을 추가하는 것은 실질적 변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향후 전망

통일 원산지규정 제정작업의 일정에 의하면 기술위원회는 96년 10월 20일까지 제2계 작업, 즉 원산지 판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될 품목의 선정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협의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위원회는 협상시한의 준수를 위해 협상시 쟁점사항으로 등장하는 문제에 대해 비공식 회의(예를 들면 금년 9월초 개최된 오타와 주요국 비공식회의)를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제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9차 회의가 끝난 9월말 현재 합의율이 63%에 그치는 등 진전현황이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마지막에는 정치적 대타협이 있어야 기한내에 통일 원산지규정 제정작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IV. 영향 및 대응방안

1. 전반적 영향

세계경제 블록화 확대,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對블록권 국가로의 해외직접투자자와 중국 등 구공산권 국가로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 상황에서 향후 제정될 통일 원산지규정이 우리의 수출 및 해외투자에 장벽으로 작용할 경우 우리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리경제의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따라 외국의 對韓투자와 수입증정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으로 원산지 규정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한 피해도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너무 엄격한 규정의 운용은 외국으로부터의 첨단기술 도입에 대한 투자장벽으로 작용하여 우리의 첨단기술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양산업에 대한 국내산업구조의 원활한 조정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원산지규정은 반덤핑, 쿼터, 원산지 표시 등의 적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최근 해외투자의 증대 및 기업의 범세계적 부품조달(global sourcing)의 증가로 반덤핑, 쿼터 등 무역조치의 우회(circumvention)를 우려하여 미국, EU 등이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최근 우리기업들의 해외투자가 증가하면서 원산지 판정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멕시코에 진출한 삼성전자가 현지에서 조립·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컬러 TV에 대해 미국이 제3국 우회덤핑 규정을 적용하여 동 컬러 TV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판정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 통일 원산지규정 제정작업에서 품목별 원산지 판정기준이 어떻게 정립되느냐에 따라 생산활동과 관련된 기업의 해외투자 및 부품조달전략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외투자기업 및 주요 원부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생산업체들은 동 통일 원산지규정 제정작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 통일 원산지규정 제정작업이 완료되면, 각국이자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덤핑, 쿼터 등 비특혜 제도에서의 상이한 원산지 판정기준이 국제적으로 통일됨으로써 원산지규정의 무역장벽적 요소가 제거될 것이며, 이로 인해 무역 및 해외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특히 수출입업자 및 해외투자기업은 원산지규정의 투명성과 예견 가능성을 보장받음으로써 예상치 못한 불이익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이다.

2. 주류산업에 미치는 영향

통일 원산지규정 제정이 우리나라의 주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원산지 판정방법으로 실질적 변형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 즉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중 어떠한 기준이 품목별로 채택되느냐에 따라 그 영향도 품목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각국은 자국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자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원산지규정 통일화 작업을 추진시킬 가능성이 많아 품목별 원산지 제정방법 채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작을 뿐만 아니라 원산지규정의 關稅相當額(TE) 등에 대한 분석자료가 없어 원산지규정이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특히 우리의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화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수출증가 추세에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세번변경기준』의 원산지규정이 채택되고 수입증가 추세에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등과 같은 강화된 원산지

규정이 채택되는 것이 수출증대 효과와 수입 증가 최소화 효과를 가져 무역수지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주류업계의 대응방안

1) 통일 원산지규정 제정협상에 적극 참여

통일 원산지규정 제정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본 규정이 보다 중립적이며 자의성의 개입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리의 수출증대와 원활한 산업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원산지 규정의 구체적인 효과는 개별 품목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능한 한 『세번변경기준』을 실질적 변형의 원칙으로 채택한 품목이 확대되도록 우리와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 협조해 나아가야 한다. 예를들면 국내에서 제조하는 와인의 경우 수입 bulk wine에 국내 포도재배농가에서 생산한 포도원액을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blending하여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포도재배농가 및 관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매판매를 위한 단순 병입을 제외하고 포도즙(포도원액)을 수입하여 blending하는 경우 이를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여 blending한 국가가 원산국이 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일본과 긴밀히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통일 원산지규정의 제정협상에 임하는 각국의 자세를 살펴보면, 각국은 자국에게 유리한 품목별 원산지 판정기준의 제정을 위해 자국의 입장을 알리는 문서를 제출하여 회원국에게 배포하는 방법(미국, EU, 일본 등), 구체적인 샘플을 제시하는 방법(일본, 홍콩), 제

조공정에 대한 기술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일본, 스위스)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익을 보호할 수 있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통일 원산지규정 제정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야 할 것이다.

2) 주요국 원산지 제도의 충분한 검토

각국은 WTO 실비협정 발효일 현재 시행중인 자국의 비특혜 관련 원산지 규정, 동 규정 적용과 관련된 사법결정, 행정규칙을 협정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특혜 원산지 규정에 대해서는 즉시 WTO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국 특히 미국, EC,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통보하는 원산지 제도에 대해 혹시 우리의 수출에 장벽이 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원산지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이의 시정을 적극 촉구하여야 한다.

또한 각국은 WTO 원산지 협정 발효 후 통일 원산지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자국의 현행 원산지규정을 개정 또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경우 이해관계자가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개정 또는 새로이 도입하고자 하는 규정의 발효일보다 적어도 60일 이전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의 개정 또는 신규제정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3) 국내 원산지 관련 규정의 개편

우리나라의 원산지규정은 통일 원산지규정의 제정 원칙 등을 대부분 충족하여 별 문제는 없으나 원산지 관련 법규가 너무 분산되어 있고 정책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용될 소

지도 있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에 명료성과 객관성을 부여하는 한편 원산지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최대한 제고시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국내 수입구제제도의 적절한 활용

기업은 해외투자시 부품조달선을 국내에서 할 것인지 또는 해외현지에서 할 것인지 여부를 향후 제정될 통일 원산지규정의 품목별 원

산지 판정기준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對선진국에 대한 우회수출기로서 저임금 국가를 이용할 경우 우회덤핑 방지와 관련하여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경제의 개방화 추세에 따른 수입 급증으로 인해 국내산업 피해가 예상되는 바 기업은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적법절차인 반덤핑·상계관세제도, 긴급수입제한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To love and be loved is to feel the sun from both sides.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것은 태양을 양쪽에서 쬐이는 것과 같다.

- David Viscott -